

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3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5. 2. 24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15조제1항 제3호)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15조제1항제3호를 “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”로 함.

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에
위한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[illegible]

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선정기준”을 “선정 및 퇴거기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

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에
위한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·기능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한다.	제12조(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·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다음 ----- -----.
1. (생략) 2. 입주자 <u>선정기준</u> 3.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 2. ---- <u>선정 및 퇴거기준</u> 3.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제1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	제1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</u>
② ③ (생략)	② ③ (현행과 같음)